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9. 10. 23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19년 10월 11일

나. 발 의 자: 김길자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19년 10월 18일

라. 상정일자: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19. 10. 2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김길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,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(안 제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임경태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. 5. 29. 대한민국재향군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운영비 교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
- 주요내용으로는,
 - 안 제4조에서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검토결과,
 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개정에 맞춰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회 활성화를 통한 국가를 위해 헌신·봉사한 재향군인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,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 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,
 - 운영비 지원 시에는 사업 계획에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, 구체적인 지원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임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길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0월 일

발의자 : 김길자 의원 외 4명

1. 제안이유

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,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』 제16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 : 2019. 10. 11. ~ 10. 15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 중 “**재향군인**이라 함은”을 “**재향군인**이란”으로, “**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**”를 “**제5조에 따라**”로, “**자격을 갖춘 자를**”을 “**자격을 갖춘 사람**”으로 한다.

제2조 제2호 중 “**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**”를 “**제6조에 따라**”로, “**영등포구 재향군인회**”를 “**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회**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재향군인에게**”를 “**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재향군인에게**”로 하고 제3호 중 “**기타**”를 “**그 밖에**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**”를 “**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**”로 하고 제5호 중 “**기타**”를 “**그 밖에**”로 하며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재향군인회 운영비

제5조 제1항 중 “**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**”를 “**제4조에 따라**”로 하고, 제2항

중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”를
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」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중복지원 금지)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
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예우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03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
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재향군인</u>”이라 함은 「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<u>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</u> 회원의 <u>자격을 갖춘</u> 자를 말한다.</p> <p>2. “<u>재향군인회</u>”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“<u>영등포구재향군인회</u>(이하 “<u>재향군인회</u>”라 한다)”를 말한다.</p> <p>제3조(예우) <u>재향군인에게</u>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기타</u>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</p> <p>제4조(예산지원 및 지원대상사업) <u>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</u>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신설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<u>재향군인</u>”이란----- ----- -----<u>제5조에 따라</u> ----- -----<u>자격을 갖춘</u> 사람을-----.</p> <p>2. “<u>재향군인회</u>”란 법 제6조에 따라----- “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회</u>----- -----.</p> <p>제3조(예우)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</u>(이하 “<u>구청장</u>”이라 한다)은 재향군인에게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 <p>제4조(예산지원 및 지원대상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재향군인회 운영비</p>

5.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지원신청 및 보고)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03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

① (생략)

②(중복지원 금지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

6. 그 밖에-----

제5조(지원신청 및 보고) ①제4조에 따라 -----

-----.

②-----

-----에 따라 -----

-----.

제6조(중복지원 금지)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예우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03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

①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
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.